

의안번호	2219414
의 퇴 인	박덕흠의원
회 답 일	2026.7.23.
추 계 번호	26D298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법률 제15523호 부칙 제9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을 합산할 경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자 중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재량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법률 제15523호 부칙 제9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종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 신청 특례(안 법률 제15523호 부칙 제9조)

- 개정안은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합산 인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 등으로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 2009. 12. 31 시행) 부칙 제4조는 1996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공무원 중 재직기간 합산기간의 경과로

- 합산을 받지 못한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하여 재직기간 합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
- 당시에는 종전의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는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재직기간이 20년에 미달하고 합산할 경우 20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산신청을 받은 바 있음¹⁾
 - 개정안은 2010년 당시에 재직기간 합산 특례에서 제외된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자들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 발생
- 다만, 개정안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 신청 대상이 되는 자를 추려내기 위해서는 1980년대 재직자 수, 재직기간, 호봉 등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나, 현재 운영 중인 전산시스템은 해당 기간 이후에 구축된 것으로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아 대상자 수 및 1인당 연금 증가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후 실질적으로 합산 신청을 받고 재직 및 경력 증명, 호봉 등을 확인하는 심사과정이 진행되어야 대략적인 대상자 수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1)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25명의 퇴직공무원이 합산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